2015년도 신설·강화 규제심사 현황(8월말 현재)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1. 국유림의 대부등 취소 세부요건 * 신설 * 시행령 제25조의2		o 현행 법률에 국유림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이 3월27일 개정 공포(9월28일 시행)되어,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아래와 같이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①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②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는 대부 목적 달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제정안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1.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 신설 * 고시등		o 목재 규격 품질 검사기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함 * ①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②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③주요 실험장비 현황, ④시설현황, ⑤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⑥해당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o 품질검사기관 현장조사 배점기준을 정함 o 3년에 1회 이상 검사능력을 평가 받도록 함 o 검사기관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 * ①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대상 목재제품 등을 변경할 경우, ③검사기관의 소재지 또는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④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성적서의 서명권자가 변경된 경우 o 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①결과 통지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②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결과가 검사기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그 밖에 산림청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강화 규제내용
1. 정원의 등록 * 강화 * 시행령 제8조의5, 시행규칙 제15조의4	o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정원의 명칭, 정원의 소재지,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정원의 시설명세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등을 등록하도록 함 o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o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원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5천분의1) 1부. - 등록 신청 :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정원시설명세서 1부 o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 강화 * 시행령 제8조의6	o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o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 - 정원의 역사성 및 특성 - 정원의 조성·관리 상태 - 시설물 관리 상태 - 안전·위생시설 관리상태 - 정원 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그 밖에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